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7년 10월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07년 10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o 충청북도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및 지하수보전구역지정등에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충청북도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·이용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키 위함

2. 주요내용

o **목적** :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에 관한 자문

o **위원회 기능**

-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또는 협의
-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

o **위원회 구성** : 15인이내

- 위원장 : 소관 국·본부장
- 당연직위원:농산지원팀장,환경과장,수질관리과장
- 위촉직위원:교수,수리지질전문가,조사전문기관,관련시민단체

o **위촉직위원 임기** : 2년

o **위원의 자격** : 교수, 변호사, 지하수관련 전문기관, 환경단체

o **위원장직무, 회의, 간사, 수당, 운영세칙**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 40조에서 정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또는 시·군지역관리 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
2. 「지하수법」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충청북도 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지하수업무 소관 국·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

③당연직 위원은 농산지원팀장, 환경과장, 수질관리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·응용지질학·수문학·환경공학·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3. 수리지질· 응용지질· 수문· 환경·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·직원
5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(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
6. 「지하수법」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·직원

제4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통활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발췌

□ 지하수 법

제6조(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
2. 지하수의 이용실태
3. 지하수의 이용계획
4. 지하수의 보전계획

4의2.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

5. 기타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

제6조의2(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)①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(이하“지역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□ 지하수법 시행령

제40조(지하수관리위원회)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3. 그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
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**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**

1.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**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·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**
2.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**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**
3. 그밖에 **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**

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·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"이라 한다)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

1호 ~5호 생략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**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** 필요한 사항은 당해 **시·도 또는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**

□ 지하수법 시행규칙

제30조의2 (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,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 는 자가 되고,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·응용지질학·수문학·환경공학·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3. 수리지질·응용지질·수문·환경·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·직원
5.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
6.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·직원

③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0조의3 (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0조의4 (중앙위원회의 회의)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0조의5 (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)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30조의6 (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) ①중앙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30조의7 (중앙위원회의 회의록) ①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

제30조의8(중앙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)중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0조의9(중앙위원회의 운영세칙)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